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. 11. 14 선고 2024가단3749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0. 24.

판 결 선 고 2024. 11. 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나. 220만 원을 지급하고,
다. 2024. 5. 16.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9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,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2020. 12. 23.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(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)을 임대차기간 2021. 2. 16.부터 2022. 2. 15.까지, 보증금 500만 원, 월 차임 90만 원(매월 16일, 후불)으로 정하여 임대하고,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한 사실, 피고가 2023. 8. 16.부터 2024. 4. 15.까지 8개월 동안 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고,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분이 2024. 6. 19.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, 연체 차임 720만 원($=90\text{만 원} \times 8\text{개월}$)에서 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220만 원을 지급하고, 2024. 5. 16.(위 연체 차임의 종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날)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월 9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임창현

별지